

대한육상연맹 미래국가대표(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전임감독 채용 공고

(사)대한육상연맹에서는 미래국가대표 전임감독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역량 있는 지도자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모집분야

선발종목	분 야	선발인원	지원자격
투척	미래 국가대표 전임감독	1	-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회원종목단체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유급직장을 겸하지 않아야 한다. - 전임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대표지도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나. 체육관련 전공 박사학위 소지한 사람

☐ 담당업무

- 미래국가대표 선수 중·장기 육성 세부 계획 수립 및 추진
- 미래국가대표 육성 사업의 국내·외 훈련 계획 수립 및 지도와 관리
- 미래국가대표 선수의 발굴, 추천 및 선발관리
- 미래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 소속팀 훈련과 연계하여 경기력향상도 평가 및 훈련관리카드 작성, 자료관리
- 미래국가대표 선수 국내외 훈련과 국제대회 참가 결과보고 및 선수 평가, 월별업무추진실적 작성 및 제출
- 미래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기간 생활지도, 인권 및 부상, 안전관리
- 기타 미래국가대표 선수의 양성 및 경기력향상에 관계되는 사항

☐ 근무조건

구 분	분 야	계약기간	근무장소
계약직	전임감독 (투척)	계약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대한육상연맹 및 진천선수촌 국내·외 훈련지 등

☐ 결격사유

- 기타사항 참조

2 제출서류 및 일정

☐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구 분	내 용	제출기한(비고)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hayong0@kakao.com *0은 숫자임)	2025. 1. 28.(화) 18:00까지
제출서류	1) 지원서 1부(지정 양식)** 2)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지도경력증명서 1부(전, 현 소속 발행) 5) 지도실적증명서 1부(대한육상연맹 발행) 6) 경기실적증명서 1부(대한체육회 발행) 7) 육상지도자 교육/강습회 이수 관련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8) 국가대표 지도경력 및 국가대표 후보선수 지도경력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9)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부(지정 양식) 10)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1부 11) 결격사유 확인 서약서(세부 훈련지침에 의함) 12)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13) 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함) 1부 14) 주민등록초본 1부 15) 사진(최근 1개월 이내에 찍은 상반신 명함판) 1매	13번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제출 (면접일 사무처 제출) 14, 15번은 최종합격 후 제출

(**)항목 하단 별도 안내

☐ 서류제출 유의사항(**)

지원서	- 붙임 지원서 양식으로 작성(기타 양식 불인정)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 2급 전문지도자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u>국가 대표지도확인서(2년)</u> 또는 <u>체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 증명서 사본</u> 제출(모집분야 항목 참조)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 주제: 2025-2029 미래국가대표 운영 계획 - 내용 1) 본 공고 '담당업무'에 명기된 전임감독의 직무 내용에 맞추어 작성 2) 지원자의 지도 철학 및 스포츠 과학(생리학, 역학, 심리학 등) 이론을 포함하여 미래국가대표 (꿈나무, 청소년, 후보)에 대한 비전 및 운영 방안 제시 <u>*지원자가 선호하는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u> <u>*서류전형 합격자는 제출한 자료로 면접전형 시 발표 진행</u>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채용공고(서류접수)	2025. 1. 8. (수) ~ 28. (화), 21일간
면접전형(PPT 발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연맹 홈페이지 게시
최종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본 연맹 홈페이지 게시
근무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 상기 일정은 전형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 결격사유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도체 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 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 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제8호의 강간·강제추행 제외)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 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배임, 강간·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 가. 1천만원 초과와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1.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자격 정지 또는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사람
12.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회적 물의로 인하여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1년 미만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징계 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날부터 징계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 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5. 대한육상연맹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사람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변조에 의한 합격은 취소되며, 작성오류에 의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대한육상연맹 이하용 대리, 02-414-3032/3)